

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
판 결

사 건 2024가단247807 손해배상(지)
원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강남 담당변호사 서용진
피 고 B
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현수, 임성환
변 론 종 결 2026. 5. 19.
판 결 선 고 2026. 8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1. 28.부터 2026. 8. 11.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60%는 원고가, 4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0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



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토목분야 구조해석 및 설계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인 'C'와 'D'(이하 '이 사건 프로그램'이라 한다)의 저작권자이다.

나. 주식회사 E, 주식회사 F, 주식회사 G는 각 원고와 이 사건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서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, 피고는 프리랜서로서 위 각 회사가 맡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각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2020. 11.경부터 2021. 12.경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.¹⁾

[증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5호증의 1, 제6, 7, 11, 1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사용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(복제권)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에게 위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나.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,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"저작재산

1) 피고는, 위 각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의 컴퓨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컴퓨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인 점, ② 피고는 2021. 6. 30. 원고에게 '이 사건 프로그램 이용계약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쓰겠다'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후로도 피고의 컴퓨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.



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"고 규정하는바,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. 그런데 이 사건 프로그램 이용계약이 그 이용 기간 및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체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다만 이 사건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,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.

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의 침해행위의 태양 및 기간, 피고가 원고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받은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,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현재 가격표,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, 피고의 위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1,500만 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,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4. 11. 28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. 8. 11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8-25

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현경